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호 10291 제안연월일: 2025. 4.

제 안 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순번	의안명 의안번호		대표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		
1 전 전	기친경	기한민모	(제출자)	(제출일)	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	
					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		
1	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	2204500	정부	2024.10.2.	(2025. 2. 1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		
1					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		
					소위원회 회부		
	, – –				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		
2	일부개정법률안	2207002	김동아의원	2024.12.27.	(2025. 2. 1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		
					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		
					소위원회 회부		

- 가. 제424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5. 4. 17.)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- 나. 제424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 4. 23.)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,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,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'가짜 장애인기업'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.

한편,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 에는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 어인 '금원(金員)'을 '금품'으로 순화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'금원(金員)'을 '금품'으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14조제3항).
- 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8조의2제3항).
- 다.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).
- 라.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3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금원(金員)"을 "금품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3항 중 "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"를 "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"로 한다.

제18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을 받게 한 경우

다만,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세제 지원 등) ① • ②	제14조(세제 지원 등) ① •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・운영	③
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	
는 재산 또는 <u>금원(金員)</u> 의 경	<u>口亞</u>
우에는 「소득세법」 또는	
「법인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	
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	
손금(損金)에 산입(算入)할 수	
있다.	
제18조의2(장애인기업의 확인 등)	제18조의2(장애인기업의 확인 등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	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
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	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
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	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
<u>에서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	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
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	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
을 할 수 없다.	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
	에서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3(장애인기업의 확인 취	제18조의3(장애인기업의 확인 취

소)	1	중소	벤처	기업	부징	관	은
장애	인기	업의	확인]을	받은	<u>-</u>	자
가 ㄷ	구음	각 호	호의	어느	- 항	나	에
해당	하면	이를	취:	소할	수	있ા	斗.
다만,	제1	호의	경우	스에는	- 징	애	인
기업:	의	확인을	는 취	소히	-여ㅇ	F	한
다							

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• 4. (생략)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 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

소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
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
<u>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</u> 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
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
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.·4. (현행과 같음)
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.·4. (현행과 같음)
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.·4. (현행과 같음)
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②